공고 제 2023 - 2호

2023 재직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사업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등을 지원하기 위한『재직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해당 지역 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월 25일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청년인력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안정적 근로조건 마련 지원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6개 시군**

❖ **인구감소지역** :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지표로 선정
❖ 행정안전부 지정고시(`21.10.) :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 사업대상

- (참여기업) 도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제조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 (참여청년) 해당기업에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한 청년근로자 (19세 ~ 39세 이하, 충북 거주, 월급여 357만원 이하)

○ 지원기간 : 2023. 1. 1. ~ (12개월 지원)
1인 최대 2년 지원(1년 단위 서류심사)

○ 지원내용

- 지원금 매월 30만원씩, 청년에게 직접 지급
- 찾아가는 기업교육 10회 지원(신청기업, 별도공지)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5인, 사업비 소진시까지

※ 승인인원(재참여)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 사업 추진절차

참여자 모집공고	⇨	참여신청/ 승인통보	⇨	협약체결	⇨	지원금지급 교육지원 지도점검
진흥원		기업↔진흥원		기업↔진흥원		기업(근로자) ↔진흥원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도 있음

○ 참여 주체별 역할

- (진흥원) 사업운영, 기업승인 및 지원금 관리, 지도점검, 교육지원
- (사업주) 참여청년의 근로지원 및 직무능력 향상 지원, 고용유지 및 경영개선 노력, 참여 및 지원금 신청, 행정협조 등
- (근로자) 근로계약에 따른 성실한 근무 및 해당지역 정주 노력, 조직적응 교육참여, 직무적응 및 장기근속 노력 등

2. 신청대상 및 요건

□ 기업요건 (모두충족)

① **인구감소지역(6개시군)**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인 기업

② 제조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별첨1, 2] 참조

❖ **피보험자수 기준**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및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 제출서류 불가 시 중소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매출액, 자산총액, 독립성 기준)

○ **제외대상***(다음의 항목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비영리 사업장 및 법인,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자(용역업체 등)
-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이력이 있는 기업
- 고용보험 등 미가입 및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사업장

- 6개월 미만 계절적 · 일시적 인력 수요에 따른 청년고용 사업체
- 기타 소비·향락·오락 등 청년취업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

❖ **제외대상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ⅰ)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ⅱ)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 중소기업 범위해설(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참조

ⅲ)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 외국법인은 사업자 등록번호 가운데 두자리 숫자가 '84' 임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내 참여제한)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함이 원칙이나, 지방관서장이 현장실사를 통해 위험요인이 해소되어 지원사업의 사업목적인 '장기근속'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참여 가능

③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④ **소비·향락업**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종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청년근로자

* 모든 요건 공고시작일 기준('23.1.25)

① 해당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한 정규직* 근로자

② 19 ~ 39세 이하의 청년

③ 충청북도에 거주 중인 자

④ 월 평균임금**이 357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정규직 기준**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월 평균임금 기준**

- **모집공고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급여(총임금)를 기준으로 함**
-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포함(세전금액기준)
- 연차수당, PI(생산성 격려금), PS(경영성과급)은 제외

○ 제외대상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근로자
- 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직접적인 재정적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 자매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심사 후 가능

❖ **중복참여 제외 기준**
- 청년근로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재정적지원)이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에 중복지원 불가, 그 외는 허용
- '재정적지원'이란, 급여 보조성 성격을 가진 현금급여(각종 수당) 일체를 의미함.

3. 참여인원 선정 및 지원내용

☐ 참여인원 선정

○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의 서류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승인

[평가방식] 기업평가 50점 + 청년평가 50점
<참여기업> ① 직전년도(`22년도) 기준 청년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된 순
② 청년고용비율(%)이 높은 순
③ 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근속장려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는 순
④ 청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순
(예시: 가족친화인증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등의 인증서)
<참여청년> 입사일이 오래된 순
※ 동점일 경우, 청년고용비율, 청년 일자리 창출 순으로 결정

○ 서면 심사평가에 의해 높은 점수순으로 기업당 최대 5인 승인

○ 재참여 인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승인

4.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3. 1. 25.(수) ~ 2. 17.(금) 18:00까지, (24일간)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우편발송의 경우 신청서류의 접수처 도착기준으로 접수마감

○ 접수처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고용지원팀 담당자 앞
㉾ 28399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3층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 지원사업안내(사업공고/신청) **공고문 붙임 서식** 참조

* 사업참여신청서【붙임1~3,5,6,7】 및 구비서류【붙임0】

☐ 유의사항

○ 참여 희망기업(사업주)은 사업장 및 근로자의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 바라며, 신청서 등에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관련 서류의 기재내용 중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기업은 청년근로자의 지원금 신청(수령)에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등 행정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지원금 신청기간 내 미신청시 주의 통보, 2회 이상 누적시 다음 참여모집 선정에서 감점으로 반영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고용지원팀(☎043-230-9788, 9781) 문의

【별첨 1】

중소기업(제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2. 담배 제조업	C12	
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0.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2.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13.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1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1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1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1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분류기호 A, B, D~S에 해당하는 업종(비제조업)은 비해당

[규모기준]

①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일 것

[독립성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③ 독립성기준 :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2)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별첨 2】 우선지원 대상기업 판단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고용보험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근로자수
제조업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그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분류기호 A, B, D~S에 해당하는 업종(비제조업)은 비해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3.12, 2012.10.29>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개정 2012.10.29>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신설 2010.12.31, 2013.1.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2, 2010.12.31, 2012.1.13, 2012.10.29>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않는다